

의안번호	2201356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4.8.19.
추계번호	24D146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(등록정보의 공개)	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여성 1인 단독가구(이하 “여성 1인가구”)도 포함하여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 신설 (등록정보의 공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에 여성 1인가구 추가(안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

- 현행법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여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등록정보의 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, 등록정보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,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
 - －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자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동·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(아동·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

이 있는 가구)를 포함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등임

－ 여성가족부의 ‘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’사업의 내역사업인 ‘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’사업의 2024년 예산은 36억 4,500만원(4,288천건×850원(우편발송비용))

-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인 피고인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에 여성 1인가구도 포함하여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런데, 개정안에 따라 고지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여성 1인가구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하나, 성범죄자 거주지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4조¹⁾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추계가 곤란

[표 1] 최근 5년간 고지대상 성범죄자 수: 2019~2023년

(단위: 명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고지대상 성범죄자수	4,358	3,992	3,777	3,602	3,563

자료: 여성가족부

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1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4조(비밀준수)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